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67호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 제정이유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전고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전고지 업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전태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전태완・강길순・강창석・곽은정・구점득
권순재・김동엽・김수민・김원일・김인애
남재욱・남호준・류성국・박강우・박영주
박찬열・박해정・박현재・배명갑・백승규
변보미・서명일・성보빈・심임숙・오춘근
이무식・이원주・이정희・전홍표・정은미
지상록・진형익・차중현・하경석・홍용채
황점복 의원(36명)

1. 제안이유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관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전고지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전고지 업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고지”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창원시에 접수된 인가·승인·허가·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고 한다)를 처리하기 전에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도 포함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이 있는 지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등) ① 사전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인허가등의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및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2. 인허가등의 접수 일자
3. 인허가등의 담당 부서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거나 수렴 중인 경우
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이장 또는 통장에게 서면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갈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사전고지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하고, 총괄부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별지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창원시는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고지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등 신청인

인허가등 명			
성 명		연락처	
주 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수집·이용 목적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고지 절차 실시
수집·이용 항목	시설물의 종류, 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및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보유기간	사전고지 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께서 제공에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82㎜×257㎜(백상지 80g/㎡)

참고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1~12호 생략)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하 4~8호 생략)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